

일본 신선식품 품질표시 조사결과

일본은 신선식품에 대해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이하‘JAS법’)에 근거해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표시가 의무로 되어 있다(수산물은 JAS법 기준과 함께 수산물품질표시 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6호)에 의해 냉동한 것을 해동한 경우 ‘해동’, 양식된 것의 경우 ‘양식’을 표시, 미곡은 현미 및 정미 품질 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5호)에 의해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및 ‘판매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의 표시).

이 때문에 2004년부터는 종래의 소매점포 조사뿐만 아니라 소매점포가 적절한 식품표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유통업자의 신선식품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자가 행하고 있는 표시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 조사개요

- (1) 실시기관 :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무소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 (2) 조사기간 : 2004년 4월~2005년 3월
- (3) 조사내용
 - ① 소매점포에 있어서 신선식품의 표시실행 현황조사
 - 조사대상 : 37,176점포(5,441,416상품)

[2003년 : 33,742점포(5,295,317상품)]

- 조사내용 : • ‘명칭’ 및 ‘원산지’(수산물은 ‘해동’ 및 ‘양식’ 포함, 미곡은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및 ‘판매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의 표시현황
 -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진정성 확인
 - 쇠고기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근거 확인

② 중간유통업자에 있어서 신선식품의 표시실시 현황조사

- 조사대상 : 3,641사업소(85,203상품)
- 조사내용 : • ‘명칭’ 및 ‘원산지’(수산물은 ‘해동’ 및 ‘양식’ 포함)의 표시현황
 -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진정성 확인

③ 유기농산물의 표시실시 현황조사

- 조사대상 : 4,300점포(13,590상품)
- [2003년(2003년 7월~2004년 3월) : 2,757점포(7,825상품)]
- 조사내용 : • ‘유기○○’, ‘organic○○’등의 표시 및 유기 JAS 마크 표시현황

2. 소매점포의 신선식품 표시실시 상황 조사결과

2.1. 점포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2004년 조사대상인 소매점포 37,176점포(2003년 33,742점포) 중 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했던 35,738점포(2003년 32,080점포)에 있어서 ‘명칭’ 및 ‘원산지’의 표시실시 현황은 <표 1>과 같다. ‘명칭’ 표시에 있어서 전체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점포는 80.0%(2003년 74.7%), 전체 상품의 80%미만밖에 표시하지 않은 점포는 6.3%(2003년 4.4%)이다. ‘원산지’ 표시는 전체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점포가 70.3%(2003년 53.1%), 전체 상품의

80%미만밖에 표시하지 않은 점포는 10.8%(2003년 10.1%)로 나타났다.

표 1 점포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표시 사항	조 사 대 상 점포수	판매상품수에 대한 표시 실시율									
			전체상품 표 시		80~99% 상품 표시		40~79% 상품 표시		40%미만 상품 표시		표시안함	
			점포수	%	점포수	%	점포수	%	점포수	%	점포수	%
2004	명 칭	35,738	28,607	80.0	4,883	13.7	1,804	5.0	340	1.0	104	0.3
	원산지	35,738	25,126	70.3	6,762	18.9	2,870	8.0	707	2.0	273	0.8
2003	명 칭	32,080	23,962	74.7	6,699	20.9	1,140	3.5	218	0.7	61	0.2
	원산지	32,080	17,032	53.1	11,795	36.8	2,496	7.8	568	1.7	189	0.6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2.2. 상품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2004년 조사대상 점포에서 판매되었던 5,441,461상품(2003년 5,295,317상품) 중 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5,087,600상품(2003년 4,958,849상품)의 '명칭' 및 '원산지' 표시실시 상황은 <표 2>와 같다. '명칭'과 '원산지' 표시가 없었던 것은 각각 59,675상품(1.2%), 133,184상품(2.6%)이었다.

표 2 상품단위에서의 표시누락 상황(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품 목	조사상품수	명 칭		원산지		
			누락수	%	누락수	%	
2004	농산물	채 소	2,030,888	36,038	1.8	65,909	3.2
		과 일	753,783	11,043	1.5	27,292	3.6
		기 타	152,872	1,907	1.2	2,492	1.6
	축 산 물	1,288,245	1,749	0.1	10,170	0.8	
	수 산 물	861,812	8,938	1.0	27,321	3.2	
	품 목 계	5,078,600	59,675	1.2	133,184	2.6	
2003	농산물	채 소	1,863,470	35,775	1.9	95,384	5.1
		과 일	748,252	13,539	1.8	44,400	5.9
		기 타	146,697	1,832	1.2	3,259	2.2
	축 산 물	1,300,679	1,660	0.1	17,736	1.4	
	수 산 물	899,751	8,542	0.9	54,247	6.0	
	품 목 계	4,958,849	61,348	1.2	215,026	4.3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품목별로 ‘명칭’ 누락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채소로써 2,030,888상품 중 36,038상품(1.8%)이 누락되었다. 또한 과일은 ‘원산지’ 누락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으로써 조사상품 753,783상품 중 27,292상품(3.6%)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3. 미곡의 표시실시 상황

2004년 조사대상이었던 37,176점포(2003년 33,742점포) 중 미곡을 판매했던 21,519점포(2003년 23,800점포)의 표시실시 상황은 <표 3>과 같다. 미곡에 해당하는 353,816상품(2003년 336,468상품)에서 표시항목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라도 표시누락이 있었던 것은 2,360상품(0.7%)이었다. 이 중에서 ‘정미 연월일’의 표시가 없었던 것은 1,618상품(0.5%), ‘원료현미’ 표시가 없었던 것은 1,462상품(0.4%)이었다.

표 3 상품단위에서의 표시누락 상황(미곡 소매점포)

	조 사 점포수	조 사 상품수	표시누락 상품 수	표시항목별 표시누락 상품수				
				명 칭	원 료 현 미	내용량	정 미 연월일	판매자 이름 등
2004	21,519	353,816	2,360 (0.7%)	464 (0.1%)	1,462 (0.4%)	377 (0.1%)	1,618 (0.5%)	629 (0.2%)
2003	23,800	336,468	-	608 (0.2%)	2,001 (0.6%)	496 (0.1%)	2,145 (0.6%)	908 (0.3%)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소매점에서 판매되었던 미곡 중 해당 소매점이 표시책임자가 아닌 상품에서 표시누락이 있었던 경우 중간유통업자(361사업소)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표시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소가 취급하고 있는 3,236상품 중 표시항목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라도 표시누락이 있었던 것은 688상품(21.3%)이었다. 이 중에서 ‘정미 연월일’의 표시가 없었던 것은 610상품(18.9%), ‘원료현미’ 표시가 없었던 것은 374상품(11.6%)이었다(표 4). 추적조사 결과는 소매점에서 표시누락이 있었던 상품에 대해서만 중간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중간유통업자에 있어서 표시상황 전체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 4 상품단위에서의 표시누락 상황(미국 중간유통업자)

조사 사업소수	조사 상품수	표시누락 상품수	표시항목별 표시누락 상품수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판매자이름 등
361	3,236	688 (21.3%)	79 (2.4%)	374 (11.6%)	65 (2.0%)	610 (18.9%)	145 (4.5%)

주: 표시누락이 있는 상품에는 복수의 표시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2.4.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진정성 확인

2004년 4월부터 지방농정국 등은 都道府縣 단위에서 매월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각각 1품목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정해 소매점에 있어서 명칭, 원산지 등의 표시근거를 구입전표, 용기·포장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2004년 조사대상 소매점포 35,738점포의 97,080상품에 대해 표시의 진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했던 결과(표 5), 표시누락을 제외한 부적정한 명칭이나 원산지 표시가 43점포(0.12%), 60상품(0.06%)에서 나타났다. 또한 표시근거가 용기·포장에는 되어 있지만 조사 시에 해당 용기·포장이 폐기되었던 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592상품(0.61%)이었다.

표 5 소매점포에 있어서 표시 진정성의 확인상황

	조사대상상품	확 인 상 품		확인되지 않은 상품
			부적정표시상품	
농 산 물	37,643	37,423	15 (0.04%)	220 (0.58%)
축 산 물	39,164	38,994	6 (0.02%)	170 (0.43%)
수 산 물	20,273	20,071	39 (0.19%)	202 (1.00%)
계	97,080	96,488	60 (0.06%)	592 (0.61%)

주: 부적정 표시 상품이 보여 진 점포는 43점포임.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2.5. 쇠고기 명칭 및 원산지 표시 근거확인

2003년 12월 미국의 BSE 발생으로 신선식품의 표시실시 상황조사의 일환으로써 쇠고기의 명칭 및 원산지 표시 근거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2004

년 조사대상 소매점포 16,492점포의 273,240상품에 대해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표시누락을 제외한 부적정한 명칭이나 원산지 표시가 16점포(0.10%), 57상품(0.02%)에서 나타났다(표 6).

표 6 쇠고기 원산지 등의 표시 근거 확인상황

조 사 점 포			조 사 상 품		
	적정표시점포	부적정표시점포		적정표시상품	부적정표시상품
16,492	16,476 (99.90%)	16 (0.10%)	273,240	273,183 (99.98%)	57 (0.02%)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2.6. 부적정표시의 대응상황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진정성 확인과 쇠고기 명칭 및 원산지 표시의 근거확인에 있어서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확인되었던 7업자에 대해 JAS 법에 근거한 지시와 지시를 행했던 취지를 공표하였다(국가에 의한 4업자 및 관계 都道府縣에 의한 3업자). 이 외에 표시누락이나 명칭, 원산지 등의 경미한 부적정 표시가 인정되었던 경우 그 자리에서 해당 표시의 개선지도를 하였고, 후일 표시누락이나 부적정 표시 정도에 대응해 문서에 의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소매점으로부터의 개선보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개선상황의 확인을 행하고 있다.

3. 중간유통업자의 신선식품 표시실시 상황 조사결과

3.1. 사업소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

2004년 조사대상 중간유통업자 3,641사업소 중 일부 상품에 명칭 혹은 원산지 표시누락이 보여진 사업소는 108사업소(3.0%)이었다. 또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별 중간유통업자의 소매점포로의 표시실시 상황은 <표 7>과 같다.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1,583사업소 중에서 일부 상품에

명칭 혹은 원산지 표시누락이 보여 졌던 사업소는 20사업소(1.3%)이며, ‘축산물’은 43사업소 중 7사업소(16.3%)이었다. 또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2,017사업소 중 일부의 상품에 명칭 혹은 원산지 표시누락이 나타났던 사업소는 81사업소(4.0%)이었다.

표 7 소매점포에로의 표시실시 상황

	조사대상사업소수		
		전체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사업소(%)	일부상품에 표시누락이 보여진 사업소(%)
농산물	1,583	1,563 (98.7)	20 (1.3)
축산물	43	36 (83.7)	7 (16.3)
수산물	2,017	1,936 (96.0)	81 (4.0)
계	3,643	3,535 (97.0)	108 (3.0)

주: 복수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사업소수의 계와 조사 대상 중간유통업자수(3,641사업소)와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3.2. 상품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

2004년 조사대상 중간유통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85,203상품 중 1,690상품(2.0%)에 대해 명칭 혹은 원산지 표시누락이 보여 졌다. 또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별 상품 표시상황은 <표 8>과 같다. ‘농산물’에 있어서 47,934상품 중 명칭 또는 원산지 표시누락이 보여 졌던 것은 644상품(1.3%)이었으며, ‘축산물’은 1,084상품 중 9상품(0.8%)이었다. 한편 ‘수산물’에 있어서 36,185상품 중 명칭 또는 원산지 표시누락이 나타난 것은 1,037상품(2.9%)이었다.

표 8 상품단위에서의 표시누락 상품 상황

	조사상품수		
		표시누락 상품수	%
농산물	47,934	644	1.3
축산물	1,084	9	0.8
수산물	36,185	1,037	2.9
계	85,203	1,690	2.0

주: 표시실시 상황조사에서 수산물의 ‘해동’, ‘양식’ 표시누락은 보여 지지 않았음.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3.3. 명칭 및 원산지 등의 표시 진정성 확인

2004년 조사대상 중간유통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85,203상품에 대해 명칭 혹은 원산지(수산물은 ‘해동’ 및 ‘양식’ 포함) 표시 진정성을 확인한 결과(표 9), 확인상품에 대해서는 표시누락을 제외한 부적정한 명칭이나 원산지 표시는 보여 지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명이 구입전표나 용기·포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두에 의한 확인만으로 표시하고 있었던 등 표시의 진정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2,448상품(2.9%)이었다.

표 9 중간유통업자의 표시 진정성 확인상황

	조 사 상 품 수				
		확인상품수	%	확인되지 않은 상품수	%
농산물	47,934	47,127	98.3	807	1.7
축산물	1,084	1,070	98.7	14	1.3
수산물	36,185	34,558	95.5	1,627	4.5
계	85,203	82,755	97.1	2,448	2.9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3.4. 명칭 및 원산지 누락표시의 대응상황

소매점포로 판매하는 상품에 명칭, 원산지 등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해당 표시의 개선지도 하였고, 후일 표시누락의 정도에 대응해 문서에 의한 개선지도 등을 행하였다. 또한 중간유통업자로부터 개선보고가 행하여졌던 후에는 개선상황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4. 유기농산물의 표시실시 상황 조사결과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JAS법에 의해 유기 JAS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기○○’나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성에서는 신선식품의 표시실시 상황조사에 맞춰 전

국 소매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유기○○’ 등의 표시가 유기 JAS마크를 부착한 위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기 JAS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수입농산물을 수매하여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물소비기술센터가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점포조사 실시상황

4.1.1. 점포단위의 ‘유기○○’ 표시 및 유기 JAS마크 표시실시 상황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신선식품의 표시실시 상황을 조사한 소매점포 중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한 4,300점포의 표시실시 상황은 <표 10>과 같다. 유기 JAS마크를 부착한 우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4,173점포(97.0%), 유

표 10 점포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

단위: 점포, %

2004	유기JAS마크를 부착한 우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	4,173 (97.0)
	유기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	127 (3.0)
	점두에서 ‘유기○○’ 등의 표시를 할 때 유기JAS마크의 게시를 잊었음.	5 (0.1)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음.	122 (2.8)
합 계		4,300(100.0)
2003	유기JAS마크를 부착한 우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	2,601 (94.3)
	유기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	151 (5.5)
	점두에서 ‘유기○○’ 등의 표시를 할 때 유기JAS마크의 게시를 잊었음.	17 (0.6)
	유기농산물에는 없는 농산물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음.	134 (4.9)
	잘못된 유기JAS마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	5 (0.2)
합 계		2,757(100.0)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기 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127점포(3.0%)이었다. 유기 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한 점포 중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122점포(2.8%), 점두에서 ‘유기○○’ 등의 표시를 할 때 유기 JAS마크의 게시가 누락되었던 것은 5점포(0.1%)이었다.

4.1.2. 상품단위의 ‘유기○○’ 표시 및 유기 JAS마크 표시실시 상황

조사대상 점포에서 판매되었던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 13,590상품 중에서 유기 JAS마크를 부착한 우에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은 13,392상품(98.5%), 유기 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어 부적정한 표시였던 농산물은 198상품(1.5%)이었다(표 11).

표 11 상품단위에서의 표시실시 상황

	품 목	조 사 대 상 농 산 물 상 품 수		
			그중 부적정한 표시 농산물 상품수	
			상품수	%
2004	채 소	10,429 (270)	128 (2)	1.2 (0.7)
	과 일	1,839 (1,682)	34 (6)	1.8 (0.4)
	미 곡	877 (1)	26 (0)	3.0 (0.0)
	기 타	445 (82)	10 (6)	2.2 (7.3)
	계	13,590 (2,035)	198 (14)	1.5 (0.7)
2003	채 소	6,201	178	2.9
	과 일	975	33	3.4
	미 곡	411	31	7.5
	기 타	238	24	10.1
	계	7,825	266	3.4

주: () 내는 수입농산물 상품수 및 구성비임.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4.1.3. 부적정한 ‘유기○○’ 등의 표시 상황

유기 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었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업자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업자별 부적정한 ‘유기○○’ 표시 실시자수

	업자	부적정한 ‘유기○○’ 표시	
		실시자수	%
2004	소매업자	55	42.3
	중간유통업자	8	6.2
	생산출하자	67	51.5
	계	130	100.0
2003	소매업자	97	61.8
	중간유통업자	23	14.6
	생산출하자	37	23.6
	계	157	100.0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4.1.4. 지도상황

유기 JAS마크 없이 ‘유기○○’ 등의 표시가 되었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해당 표시의 제거, 말소를 지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적정한 표시의 실시자인 소매업자, 중간유통업자 혹은 생산출하자에 대해서는 후일 문서에 의한 개선지도 등을 하였다. 더욱이 표시 책임자로부터 개선보고가 이루어졌던 후에는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문서에 의한 개선지도를 행한 사업자 등에 있어서 개선상황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JAS법에 근거해 부적정 표시의 제거·말소 명령을 행하고, 사업자명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례는 없다.

4.2. 잔류농약분석의 실시상황

조사점포에 있어서 판매되었던 유기 JAS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수입농산물 17상품을 구매하여 유기농산물에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농약의 잔류분석을 실시하였고, 2상품에서 해당 농약의 잔류가 검출되었다. 이 때문에 소급조사를 실시한 바, 2건의 JAS법에 근거한 인정 소매업자가 유기농산물이 아닌 수입과일에 부정하게 유기 JAS마크를 부착한 것이 판명되었기에 해당 2건의 업자에 대해서 JAS법을 기초로 인정을 취소하였다.

5. 쌀의 DNA 품종판별 조사결과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써의 위치, 명품 쌀 지향의 진행, 최근 정미의 부정표시 현재화 등을 배경으로 쌀의 품질표시 진정성의 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으로 있다. 이 때문에 적정 표시의 감시체제를 연간 계속하기 위해 DNA 분석을 활용한 품종 판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결과는 이하와 같다.

5.1. DNA 품종판별 조사 실시상황

본조사의 실시는 전국 미곡 전문점을 포함한 식품 소매판매점으로부터 정미 550점을 수매해 DNA 분석을 한 결과, 그 중 77점(14.0%)에서 표시와 다른 품종이 혼입(이하 ‘이품종 혼입’이라 칭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반응이 보여 졌다.

표 13 품종판별 실시상황

단위: 점

	2004			2003		
	판 별 실시점수	판별결과		판 별 실시점수	판별결과	
		혼입 없음	혼입 의심		혼입 없음	혼입 의심
코시히카리	367	320	47	282	252	30
아키타코마찌	72	55	17	80	66	14
히토메보레	63	55	8	54	48	6
히노히카리	20	18	2	55	53	2
키누히카리	5	4	1	12	7	5
하에누키	12	12	0	13	10	3
사사나시키	0	0	0	5	5	0
日本晴	0	0	0	2	2	0
하나에치젠	6	5	1	6	6	0
밀키퀸	5	4	1	5	4	1
계	550	473	77	514	453	61
실판매자수	550社	473社	77社	459社	410社	49社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5.2. 소급조사 실시상황

DNA 품종판별 조사에 의해 이품종 혼입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표시 책임자가 廣域업자인 경우 국가가, 縣域업자인 경우는 都道府縣이 주체가 되어 원인구명을 위한 소급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시책임이 있는 53사에 이품종 혼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7사는 통상 행해지는 품질관리가 행하여지고 있어 이품종 혼입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표 14). 한편, 이품종 혼입의 원인이 판명된 53사에 대해서는 1사는 JAS법에 근거한 명령이, 2사는 JAS법에 근거한 지시가, 50사는 구두 혹은 문서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표 14 소급조사 실시상황

	2004				2003			
	조사 업자수	지도 등 판매자 등에 발생 원인이 있는 것	판매자 등은 통상 행하는 관리가 이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조사중	조사 업자수	지도 등 판매자 등에 발생 원인이 있는 것	판매자 등은 통상 행하는 관리가 이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조사중
廣域 업자	3	2	1	0	3	1	0	2
縣域 업자	74	51	6	17	46	25	4	17
계	77	53	7	17	49	26	4	19

자료: 농림수산성, ‘신선식품 품질표시 실시현황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2005.8.12.

자료: 農林水産省 消費安全局,
 ‘生鮮食品の品質表示實施現況調査等の結果について(2004年度)’, 2005.8.12.
 (박기환 kihwan@krei.re.kr 02-3299-43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